

# 한국철도학회영문논문집논문심사규정

제정: 2025.06.16.(이사회 의결)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철도학회(이하 ‘학회’)의 영문논문집 논문투고규정에 의거 접수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주관) 편집인이 지정한 심사주관 부편집인이 모든 심사과정을 주관한다.

제3조 (적합성 평가) 담당 부편집인은 접수 논문이 ‘논문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한 후, 그 조건이 미비하거나 주제가 투고 분야와 적합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교신저자에게 채택불가 판정을 심사결과로 통보한다.

## 제4조 (심사위원 위촉)

- ① 심사주관 부편집인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② 위촉 심사위원의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재심 및 그 이후의 심사(이하 ‘재심’)의 경우 이전 심사에 위촉된 심사위원을 재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위촉된 심사위원의 신분은 비밀로 한다.

## 제5조 (심사위원 해촉)

- ① 심사위원이 초심 위촉을 받고 2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1회 독촉하고 위촉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이 재심 위촉을 받고 1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1차 독촉하고 위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 (심사위원 의무)

- ① 부편집인은 규정된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정한 심사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을 심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심사논문의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염수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의 해촉 또는 심사 완료시점에 심사 의뢰된 논문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

## 제7조 (심사기간)

- ① 초심의 경우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인

정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 교체 위촉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 ② 재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심사위원 교체 위촉의 경우에는 심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제8조 (심사의견서)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의견서를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9조 (심사결과의 판정구분) 심사결과의 판정은 채택불가, 재심, 조건부채택, 채택으로 구분하며, 판정결과는 교신저자에게 통보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판정시점)

- ① 심사기간 중 최소 2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심사의견서만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 ② 심사기간을 초과하여 2회 이상 심사위원을 교체 위촉했음에도 1명 이하의 심사위원으로부터만 심사의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기 접수된 심사의견서와 심사주관 부편집인의 심사의견으로 심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결과의 판정기준)

- ① 심사결과는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다음 ②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결과의 판정은 심사주관 부편집인의 판단으로 결정한다.

- ② 심사결과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채택) 접수된 논문의 상태로 게재 가능한 경우에 '채택'을 판정할 수 있다.

(조건부채택) 논문의 내용과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 오타 등의 미미한 수정 이외에 다른 중요한 수정 및 보완할 사항이 없어서 재심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건부채택을 판정할 수 있다.

(재심) 위촉 심사위원 중 채택불가가 1/3 이상이거나 채택불가를 포함하여 재심이 1/2 이상인 경우 재심 이하로 판정한다.

(채택불가) 접수된 논문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택불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1)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 (2) 본 논문집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3) 독창성 및 학술적 기여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
- (4) 연구방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
- (5) 연구내용과 결과 또는 결론이 무관한 경우
- (6) 본 논문집의 논문원고작성규정을 크게 위반한 경우
- (7) 참고문헌의 인용이 크게 부실하거나 허위인 경우
- (8) 영어 표기가 심하게 부정확한 경우
- (9) 기타 명백한 채택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상기 판정기준은 위촉된 심사위원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수정 및 보완)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수정 및 보안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시점으로부터 초심의 경우 3개월, 재심 이상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교신저자로부터 수정 및 보완된 논문의 제출이 없으면 채택불가로 처리한다.

제13조 (심사결과 확정판정)

① 심사주관 부편집인이 채택 또는 채택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인에게 추천하면 담당 편집인이 판정 결과를 검토하여 확정 판정한다.

제14조 (논문심사료) 심사의견서를 회신한 심사위원에게는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심사제한) 투고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린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편집인이 투고한 논문에 대해서는 부편집인 중 1인을 공동 편집인으로 지정하여 편집인의 역할을 대행토록 한다.

제16조 (이의심사 절차) 심사결과에 대한 교신저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인이 검토 후 담당 부편집인에게 조사를 의뢰해야한다. 부편집인은 논문이 규정에 맞게 심사가 되었는지 논문 및 심사자 의견 전반을 검토한 후, 결과를 편집인에게 통보해야한다. 검토결과는 편집인의 명의로 교신저자에게 전달한다.

제17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의 1/3 참석과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편집자문위원은 참석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8조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인 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25.6.16.)

1. (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